

광명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

제정 2012. 11. 5 조례 제1887호
일부개정 2018. 7. 31 조례 제2372호(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광명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시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공개대상)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산절감 사례
2. 시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,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
3.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
4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의 공개대상은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.

제3조(공개방법) 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.

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생년월일·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7. 31>

제4조(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) ① 시장은 예산·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·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·운영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시정요구,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(제2항에 따른 보완기

간은 제외한다)에 하여야 한다.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 시장은 시정요구, 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된다.

제5조(예산낭비 등 심사) 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심사는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가 행한다.

제6조(포상 및 성과금 지급 등) 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또는 개인과 조직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②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③ 시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.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,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「광명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18. 7. 31 조례 제2372호, 조례 용어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